

보도 시점 2025. 8. 5.(화) 12:00 배포 2025. 8. 5.(화) 10:00

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

- '25년 상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·납부 기한은 9.1.입니다 -

□ **개요** 2025년 상반기(1월~6월)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.1.(월)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(신고대상) ①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, ②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,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(중소·중견기업 주식을 K-OTC¹⁾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²⁾는 제외)가 신고대상입니다.

1)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(Korea Over-The-Counter)

2) 지분율 4% 미만 &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

|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|

- ▶ 지분율 1%(코스피)·2%(코스닥)·4%(코넥스)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
-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,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

○ (안내대상)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*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.

*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양도(이체)한 경우에 한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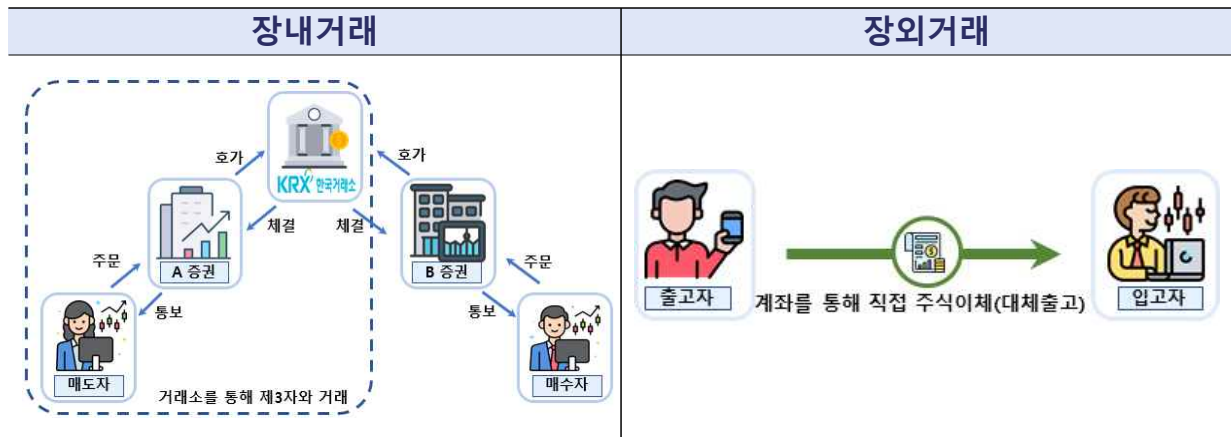
|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확대 |

상장구분	거래구분	주주구분	신고 대상	기존 안내	'25년 8월
상장 법인	장내거래	① 대주주	○	○	○
		소액주주	X	-	-
	장외거래	① 대주주	○	○	○
		② 소액주주	○	X	○
비상장 법인	장외거래	③ K-OTC	○	○	○
		④ K-OTC 외	○	X	○

○ (안내일정) 8월 5일(화)부터 카카오,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(8.12.)할 예정입니다.

- **장외거래**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(KRX)가 개설한 증권시장(코스피·코스닥·코넥스)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됩니다.

| 장내거래·장외거래 비교 |



-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(양도)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.
- '25. 3. 4. 출범한 대체거래소*(넥스트레이드)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.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.

*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매매·중개·주선·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

- **신고도움**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¹⁾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²⁾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1)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(양도일자, 양도가액, 양도주식수 등)

2) (기존)상장주식 대주주·K-OTC시장 주주 → (확대)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소액주주, 비상장주식 주주

-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, 세율선택 도우미,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**당부말씀**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'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'임을 인식하여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-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	책임자	과 장	최원봉 (044-204-3471)
		담당자	서기관	이원주 (044-204-347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주연 (044-204-2501)
		담당자	사무관	김희재 (044-204-2532)
		담당자	사무관	김미경 (044-204-2542)



참고 1

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

step.1 양도내역 불러오기

- ➔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입력화면에서 2025년 상반기(1월~6월) 거래내역을 "양도내역 불러오기"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주식등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

○ 양도자산 내역

양도내역 불러오기

* 국내/국외구분	☒ 국내주식 ☐ 국외주식		
* 사업자등록번호	- - - 입력 ① 상장주식은 종목명, 종목코드로 검색하여 사업자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		
* 주식종목코드		주식종목명/상호명	
* 양도일자	yyyy-mm-dd	* 양도유형	[01] 매매
* 취득일자	yyyy-mm-dd	* 취득유형	-선택-
*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			

! < 양도물건 종류 세율 선택 도우미 >
① 아래 항목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.

중소기업 여부 확인 ○ 여 ○ 부	상장주식 여부 확인 ○ 여 ○ 부	대주주 여부 확인 ○ 여 ○ 부	보유기간 -선택- 조회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※ 위 자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. 자료의 구축 시기에 따라 상장주식·대주주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양도물건종류	-선택-	도움말
* 세율구분	-선택-	도움말
* 주식종류	-선택-	도움말

step.2 팝업으로 거래내역 제공

- ➔ ① 건수는 한꺼번에 10건, 20건, 100건씩 한 화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② 건별로 선택 후 ③ 불러오기 클릭
➔ 작성한 양도내역은 목록바탕색이 음영처리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주식등 양도내역 불러오기

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 시 아래의 양도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주식등 양도내역은 신고참고용으로, 건별로 선택 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사실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* 양도내역 전체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(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)

주식등 양도내역

1 10 확인

2 선택	순번	사업자등록번호	주권발행법인	양도일자	양도주식수	양도가액	종목코드	종목명
☒	1	133-81-0	(주) 가나다	2025-02-13	100	14,110,000	KR7068270008	가나다
☐	2	133-81-	(주) 라마바	2025-03-06	100	13,940,000	KR7068270008	라마바
☐	3	133-81-	(주) 사아자	2025-04-01	100	14,600,000	KR7068270008	사아자
☐	4	133-81-	(주) 차카타	2025-04-01	758	136,336,600	KR7068270008	차카타

1 총4건(1/1)

3 불러오기 닫기

step.3 신고항목(6종)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

- 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신고항목 6종(사업자등록번호, 주식종목코드, 양도일자, 양도주식수, 양도가액, 양도소득금액)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 단, 장외거래자의 양도가액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.
- ➔ 해당 자료는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로 신고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양도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에 맞게 작성(수정)하시면 됩니다.
- ➔ 그 외 작성항목인 양도물건종류, 세율구분, 주식종류는 <양도물건 종류 세율 선택도우미>를 활용하셔서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

○ 양도자산 내역

양도내역 불러오기

* 국내/국외구분		☒ 국내주식 ☐ 국외주식	
1 *사업자등록번호	133 - 81 -	입력	! 상장주식은 종목명, 종목코드로 검색하여 사업자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
2 *주식종목코드	KR7068270008	주식종목명/상호명	가나다
3 *양도일자	2025-02-13	*양도유형	[01] 매매
*취득일자	yyyy-mm-dd	*취득유형	-선택-
4 *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	100		

! < 양도물건 종류 세율 선택 도우미 >

! 아래 항목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.

초기화

중소기업 여부 확인 ○ 여 ○ 부	상장주식 여부 확인 ○ 여 ○ 부	대주주 여부 확인 ○ 여 ○ 부	보유기간 -선택- 조회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※ 위 자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. 자료의 구축 시기에 따라
상장주식-대주주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양도물건종류	-선택-	도움말
*세율구분	-선택-	도움말
*주식종류	-선택-	도움말

○ 양도소득금액 계산

도움말

5 *양도가액(총 거래금액 입력)	주당 141,100원	14,110,000 원
*취득가액(총 거래금액 입력)		원
필요경비		원
6 *양도소득금액	전제 양도소득금액	14,110,000 원
	비과세 양도소득금액	원
	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	14,110,000 원

참고 2

주식 장외거래 관련 주요 문답(Q&A)

Q 1 장외거래란 무엇인가요?

A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(KRX)가 개설한 증권시장*(코스피·코스닥·코넥스)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됩니다.

* 대체거래소(넥스트레이드) 포함

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(양도)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.

| 증권계좌간 주식 이체시 증권사 모바일어플 화면 예시 |

유가증권대체 해외입고안내

유의 5561- [위탁종합] ****

대체종목 카오 종목선택

대체수량 10주

대체계좌 내 계좌 타인 계좌

타인 명의 계좌 8자리

계좌명 계좌확인

양도여부

☒ 양도함 ☐ 양도하지 않음

Q 2 시간외매매를 하였는데 장외거래 인가요 ?

A 시간외매매는 장외거래가 아닙니다.

시간외매매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 한국거래소(KRX)를 통해 이뤄지는 주식거래입니다. 즉 정규장의 시작 전 또는 끝난 후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시간만 다를 뿐 장내거래에 해당합니다.

Q 3**상장법인 대주주가 아닌데도 신고대상인가요?**

- A**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, 장외거래한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

Q 4**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하나요?**

- A** 안내문은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는 거래사실에 맞게 본인이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.

특히 장외거래자는 증권사가 제출한 증권계좌간 이체자료*를 기반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납세자가 주식 이체시 입력한 이체사유 (양도 또는 양도외)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

* 증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직접 이체(양도)한 거래내역

만일 주식 이체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,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 외 본인계좌로의 이체, 대차 거래 등 실제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.

Q 5**주식 장외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**

- A** 홈택스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경로 국세청 홈택스 ➡ 공인인증서/간편인증 로그인 ➡ 세금신고 ➡ 양도소득세 신고 ➡ 신고도우미 서비스 ➡ 4.주식등 거래내역 ➡ 상장주식 소액주주·비상장주식 주주거래 조회